

결정

우크라이나의 이름으로

2022. 4. 14.

키예프

사건번호 제 308/9708/19 호

절차 번호 61-18782 CB21

대법원(민사파기심 제 3 부 합의체)

재판장 IM Falovska

판사 V. M. Ignatenko(주임 판사), S. O. Karpenko, VV Serdyuk, V. A. Strilchuk

당사자:

원고 A 자신과 미성년 자녀 B, C 의 이익을 대표한다.

피고 러시아 연방

2021. 9. 1. 트랜스카르파티아 항소법원(재판관 Gotry T.Yu., Sobosloya H.G., Kondora R.Yu. 합의체)의 결정에 대한 자신과 미성년 자녀 B, C 의 이익을 대표하는 A 의 파기상소를 간이 절차로 심리했다:

이유

사건 개요

청구 요지

2019. 8., 자신과 미성년 자녀 B, C 의 이익을 대표하는 A 는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러시아 연방에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청구는 2006. 11. 11., A 가 D 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 결혼으로 두 자녀 B, C 가 태어났다.

원고의 남편 D 는 1994. 12. 14. 군에 소집되어 1997. 6.부터 군○○부대 소속으로 2013.

10 월부터 군○○부대 저격소대 상사로 복무했다. 그는 2014. 5. 18.부터 전선에 배치되어 2014. 5. 19.부터 2014. 8. 6.까지 도네츠크 지역과 루한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보호에 관한 군사 작전에 참가했다.

2014. 8. 6., D 는 전투 임무 중 폭발로 인한 부상과 여러 개의 유탄(榴彈) 파편이 몸에 관통하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밤 3 시경 루한스크 국제공항(루한스크주 루긴스키 지역 게오르기프카 마을) 인근 루한스크 지역에서 러시아 연방 점령군 용병 BM-21 '글래드'가 루한스크 국제공항을 포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부상으로 인해 원고의 남편인 D 중위가 사망했다.

A 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과 자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으로 남편 또는 아버지인 D 를 잃은 결과, 그리고 러시아 연방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특유의 냉소주의로 인해 원고와 자녀들은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마음의 평온과 미래에 대한 신뢰를 잃고, 끊임없이 불안과 실망을 느끼며,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A 는 원고와 그 자녀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행위의 직접적인 주체는 러시아 연방이라는 외국 국가와 그 군대, 그리고 러시아 연방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원, 후원, 관리되고, 그 사용이 타인에게 매우 위험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 조직이라고 믿는다.

원고는 러시아 연방의 불법행위가 유럽인권조약 제 2 조에 보장된 남편 D 의 생명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 동조약 제 8 조에 명시된 A 와 자녀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위와 같이 러시아 연방에서 A, B, C 의 법적 권리에 대한 여러가지 침해가 있었고, 이러한 조약 위반은 원고와 그 자녀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원고는 러시아 연방에 대해 자신과 자녀 B, C 에게 각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이하 NBU)의 소송 제기일 공식 환율로 6 만 유로에 해당하는 1701 만 600 흐리브냐, 총 NBU 공식 환율로 18 만 유로에 해당하는 510 만 4800 흐리브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원판결의 요지

2021. 2. 2. 우주고로트시 및 자카르파티야 지방법원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1 심 법원 판결은 모든 주권 국가는 권한 있는 자를 통해 표명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타국 법원에서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러시아 연방의 권한 있는 당국이 피고로서 참여한다는 동의를 하거나 그녀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2021. 9. 1. 자카르파티아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법무부는 러시아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의 결과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 자신과 미성년 자녀 B, C의 이익을 대표하는 A의 청구에 따른 우크라이나 법원의 민사 사건 심리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다. 요청서 및 항소장과 항소심 개시 결정의 사본을 주 우크라이나 러시아 연방 대사관에 전달하도록 우크라이나 외무부에 지시했다. 법원은 대사관의 권한 있는 기관이 위임장을 수령하거나 대사관이 해당 서류를 수령했음을 적절히 확인한 시점부터 답변 없이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의 절차를 정지했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이 사건의 피고가 러시아 연방이라는 외국 국가이며, 독립적인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법원이 러시아 연방에 이 사건의 피고가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는 정보는 없으며, 우크라이나 외무부를 통해 러시아 대사관에 소환장을 보냈다는 증거도 없다. 외교사절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외국 국가는 민사소송에서 피고로서의 절차적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법원은 주 우크라이나 러시아 연방 대사관에 해당 민사사건에 대한 우크라이나 법원의 심리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의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2022. 1. 27. 트랜스카르파티아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번호 308/9708/19의 항소 절차가 변경되어 이 사건은 2022. 3. 30. 오후 2시에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항소법원의 위 판단은 2021. 12. 16. 소송통지서 사본이 러시아 연방 대사관에 송달되어 절차 정지의 원인이 된 사정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심리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주장

파기상소(破棄上訴)의 취지 및 주장 요지

2021. 11. 대법원에 제출된 파기신청서에서 자신과 미성년 자녀 B, C의 이익을 대표하는 A는 항소법원의 실체법의 잘못된 적용과 절차법 위반을 언급하며 2021. 9. 1. 자카르파티아 항소법원의 결정 취소와 대법원에서의 계속 심리를 요청했다.

파기상소는 트랜스카르파티아 항소법원이 우크라이나의 '국제사법(國際私法)에 관한 법률' 제 79 조 제 1 항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고, 이 사건에서 러시아 연방의 국가면제 여부에 대한 결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신청인은 오늘날 세계 대다수 선진국의 입법 및 사법 실행에서 국가와 그 재산에 대해 주권적 성격의 활동에 대해서만 면제를 부여하고, 국가의 주권적 기능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에 대해서는 면제를 부정하는 제한적 면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A 는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는 모두 현대 국제법의 주요 개념인 제한적 면책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신청인은 유럽인권재판소(이하 'ECtHR')가 2013. 3. 14. Oleynikov v. Russia 사건 판결에서 2004 유엔 국가면제조약은 해당 국가가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관습국제법에 따라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언급한다.

러시아 연방은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06. 12. 1.에 서명했다(2013. 3. 14. ECtHR 판결 Oleynikov v. Russia 66 항).

A 는 러시아 연방이 피고가 된 No.796/165/18 사건의 심리에서 대법원이 유럽국가면제조약과 유엔국가면제조약의 규범을 적용했다고 단언한다.

796/165/18 사건의 2019. 1. 25. 대법원판결 75 항은 우크라이나가 해당 국제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해당 조약에 규정된 제한적 면책주의 개념은 ECtHR 2013. 3. 14. Oleynikov v. Russia 사건 판결에 비추어 관습국제법에 따라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3. 3. 14. ECtHR 의 Oleynikov v. Russia 판결 및 2019. 1. 25.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유럽국가면제조약 및 유엔국가면제조약의 규범은 관습국제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법원에 의해 적용된다.

신청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 중 러시아 연방의 행위의 비공식적 성격에 대해 러시아 연방이 식별 표시 없이 자국 군대와 장비를 사용하고 러시아 군인의 우리 영토에서의 적대 행위 참여를 완전히 부정하는 등의 행위는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이 공식적인 목적을 위한 공권력 행사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러시아 연방의 해당 활동은 주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A는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의 결과로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사건의 법률관계 당사자와 상황이 우크라이나의 '국제사법에 관한 법률' 제 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국제사법에 관한 법률' 제 79 조 제 1 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사법접근권의 실행이 러시아 연방의 행동과 직결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러시아 연방은 이러한 사안을 법정에서 심리하는 데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소법원의 원심 결정으로 인해 심리를 방해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신청인은 가해국을 심판하기 위해 가해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21. 9. 1. 자카르파티야 항소법원 결정에 대한 파기상소의 근거로 신청인은 항소법원이 우크라이나의 '국제사법에 관한 법률' 제 79 조 및 제 80 조 위반, 1961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조약 제 32 조 위반, 우크라이나 민사소송법 제 2 조 위반, 1950 유럽인권조약 제 6 조 위반을 열거했다.

파기상소에 대한 반론(답변)은 파기심에 제출되지 않았다.

파기심에서의 사건 진행 상황

2022. 1. 21. 대법원 결정으로 파기심 절차가 시작되었고, 항소법원에 사건 이송이 청구되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송되었다.

2021. 2. 21. 대법원 결정에 따라 사건번호 308/9708/19 로 심리하게 되었다.

파기심은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과 우크라이나 국가의 주권 부정에 비추어, 이 사건 파기심 절차 개시(2022. 1. 21. 결정) 및 심리 대상 사건 지정(2022. 2. 21. 결정)에 대해 피고 러시아 연방에 추가적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절차 결정에 관한 정보는 통일국가법원결정등록부에 게재되고, 그 정보는 인터넷으로 공개되며, 심리 중인 사건의 사법심사는 대법원 공식 웹사이트에 수시로 공지된다.

법원이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

사망진단서를 통해 D가 37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이 확인된다.

질병, 외상, 타박상, 부상, 사지절단의 인과관계 입증에 관한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의정서(2014. 8. 22. 의정서 2404 호)의 발췌문에 따르면 2014. 8. 6. D 의 부상과 사망 원인은 군복무 의무와 관련이 있다.

2019. 5. 31. 발효된 지토밀 지방 베르디치프시-지구 법원의 274/1970/19 사건 결정은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의 결과로 2014. 8. 6. 우크라이나 루한스크 지역 게오르기예프카 루즈긴스키 거주지에서의 군사적 임무 수행 중 D 가 사망했다는 법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망한 D 에게는 동인이 부양하던 아내 A 와 미성년 자녀 B, C 가 있었다.

법적 판단

대법원의 입장

우크라이나 민사소송법 제 3 조 3 항에 따르면, 민사사건의 절차는 개별 절차 행위, 심리, 해결 시에 효력이 있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우크라이나 민사소송법 제 402 조 제 1 항은 같은 법 제 400 조에 비추어, 제 1 심 법원이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심리하는 간이절차 규정을 파기상소에 대한 파기심 심리에 준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민법 제 389 조 제 2 항에 따르면, 동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규정된 법원의 결정에 대한 파기상소 사유는 법원에 의한 실체법규의 잘못된 적용 또는 절차법 위반이다.

이 사건 자료를 살피고 파기상소 이유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파기상소가 일부 인정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대법원 절차 및 법규범 적용 이유

우크라이나 민법 제 263 조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은 법의 지배 원칙에 따라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적법하다는 것은 절차법 규범을 준수하면서 실체법 규범에 따라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다. 법원의 결정은 민법이 정한 민사소송의 임무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법규범을 선택하여 적용할 때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관련 법규범의 적용에 관한 결론을 고려한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결정은 당사자가 주장과 반론의 근거로 언급하고 법정 심리에서 조사된 증거에 의해 확인된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밝혀진 사정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이다.

원 결정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우크라이나 민법 제 4 조 1 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침해, 부인된, 또는 분쟁 중인 권리, 자유 또는 법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의 규정은 인권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법원에 의한 보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우크라이나 헌법 규범(제 55 조)에 근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민사소송법 제 2 조에 따르면, 민사사법의 임무는 침해, 부인된, 또는 분쟁 중인 자연인의 권리, 자유 및 이익, 법인의 권리 및 이익, 국가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민사사건을 공정하고 공평하며 신속히 심리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재판을 받을 권리(절차적 의미의 방어권)는 우크라이나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헌법 제 129 조는 사법절차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법보호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헌법 제 129 조 1 항 8 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사건에 대한 상소권 및 법률로 규정된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한 파기상소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 사건 절차를 정지하면서, 이 사건에서 지방법원이 러시아 연방에 사건의 피고가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요청을 보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는 정보가 없으며, 우크라이나 외무부를 통해 러시아 연방 대사관에 소환장을 보냈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교단의 동의가 없는 한 대사관은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절차적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이러한 법원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의 절차를 정지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항소법원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유럽인권조약 제 6 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민사적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치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의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소송절차 기간의 합리성은 사건의 상황과 복잡성, 원고와 관계당국의 행동, 원고에게 있어 분쟁의 중요성 등의 요소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Pelissier

and Sassi v. France 사건 판결, Pelissier and Sassi v. France 사건번호 25444/94 및 Friedlender v. France 사건번호 No.30979/96).

우크라이나 민사소송법 제 251 조 1 항 8 호에 따르면, 법률 부조 제공, 외국 법원 또는 기타 관할 기관에 대한 소환장 및 기타 문서 송달에 관한 법원 명령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국제사법에 관한 법률' 제 79 조 제 1 항은 국가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외국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외국 국가를 피고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것, 외국에 귀속되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있는 재산의 압류, 해당 재산에 대한 청구 및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기타 수단의 행사는 우크라이나의 국제조약 또는 우크라이나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관련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우크라이나의 '국제사법에 관한 법률' 제 79 조 4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법 규범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우크라이나 및 그 재산 및 대표자에게 같은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외국 및 그 재산 및 대표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국가면제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부는 외교적 조치가 특정 국제법 위반의 결과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국가와 그 재산에 대해 국제법에 의해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국제사법에 관한 법률'은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국가의 국내 법원에서 사건에 관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에 대한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의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법규범은 1972.5.16. 유럽평의회가 채택한 유럽국가면제조약과 2004.12.2. 유엔총회 결의 59/38 에 의해 채택된 유엔국가면제조약의 두 가지 조약에 집약되어 있다. 이들 조약은 제한적 면제주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국가가 어떤 형태로 면제를 포기할 수 있는지(체결된 국제조약이나 계약에 근거한 '명시적 면제포기', 외국이 법적 절차에 참여하여 외국 법원에서 반소하는 경우의 '묵시적 포기')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당사국 법원에서 국가면제를 누릴 수 없는 경우의 유형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1972 유럽국가면제조약(제 11 조)과 2004 유엔국가면제조약(제 12 조)은 모두 당사국은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인 사람의 사망, 신체손상 또는 재산의 손상, 소멸에 대한 금전적 배상(보상)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그 작위 또는 부작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당사국의 법원의 관할권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법원에서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 조약들 중 어느 것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조약들은 외국이 민사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주장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국제법의 발전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2013.3.14. Oleinikov v. Russia 사건 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ECtHR)는 2004 유엔 국가면제조약의 규정은 '해당 국가가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관습국제법에 따라' 적용되며, 유럽인권조약 6 조 1 항에서 말하는 법원에 대한 접근권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68 절, 31 절).

ECtHR 은 2010. 3. 23. Cudak v. Lithuania 사건 판결에서도 국가면제 문제에 대한 관습규범의 존재와 제한적 면제주의가 국제적인 실행에 있어서 지배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면제에 의한 제약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목적에 비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건강이나 생명에 손해를 입히고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지국(法廷地國) 영토에서 발생하고 가해자가 당시 법정지국 영토에 있었다면, 국가는 국가면제를 원용할 권리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제관계의 주체로서 국가의 법적 지위의 특징은 국제법의 '동등한 것은 동등한 것에 대해 권력과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일반 원칙에 근거한 면제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은 국가 주권의 상호 승인이며, 러시아 연방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부정하고 침략전쟁을 벌일 때 러시아 연방의 주권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는 없다.

파기심은 대법원이 법적 중요성이 있는 사실 인정에 관한 판례를 재검토한 것에 주목한다. 이 가운데 신청인들은 우크라이나 및 우크라이나의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 지역의 러시아 연방 점령 지역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군사적 침략의 결과로 발생한 2014 이후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 영토의 점령지역에서의 강제이주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2018. 11. 21. 2-o/381/134/16 사건(사건번호 61-3789CB18) 판결에서 루한스크주 일부를 포함한 일시적인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자유와 인권 및 시민권을 침해한 책임이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의 일시적인 점령지역에서의 시민의 권리와 자유 및 법적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 5 조,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 및 루한스크주 일시적인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의 국가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특수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4 항에서 확인된 국제적인 권리 규범과 원칙에 따라, 점령국인 러시아 연방에 있으며, 2014. 11. 루한스크주 점령지에서 B가 강제 이주 당한 것은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 및 러시아 연방의 루한스크주 일부 점령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임을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의 결과로 루한스크 주와 도네츠크 주에서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에 대한 유사한 결론은 2018. 8. 21. 대법원 판결 No.752/6366/16-ts 사건(사건번호 61-20978CB18), 2018. 8. 21. 428/8076/16-ts 사건(사건번호 61-190CB18) 판결, 2018. 6. 6. 428/13977/16-ts 사건(사건번호 61-3831 CB18) 판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4. 이후 러시아 연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22.4.14. 우크라이나 최고의회 결의에 의한 성명문 '우크라이나에서 제노사이드를 자행하는 러시아 연방에 대하여'에 따르면, 2022.2.24. 시작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 중의 러시아 군대와 정치-군사 지도부의 행위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제노사이드로 인정되어, 우크라이나 최고의회 의장은 이 성명을 유엔, 유럽의회, 유럽평의회, OSCE 의회, NATO 의회, 각국 정부 및 의회에 전달할 것을 지시되었다. 우크라이나 최고의회 의장은 러시아 연방군과 정치-군사 지도부가 저지른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제노사이드, 인도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및 기타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범죄 사실을 적절히 기록하고 모든 범죄자 기소를 시작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검찰청, 우크라이나 외무부, 우크라이나 법무부에 촉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러시아 연방은 2014 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자행해왔으며, 이 판결 시점에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2014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 법원은 러시아 연방의 군사적 침략으로 인해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 특히 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 국가의 국가면제를 무시하면서 심리할 권리가 있다.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의 일시적인 점령지에서의 시민의 권리와 자유 및 법체계 확보에 관한 법률'의 전문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독립된 주권국가임을 확인한다.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기존 국경 내의 일체적이고 불가침의 전 영토에 미친다. 우크라이나 헌법과 법률, 1907 헤이그 조약, 1949 제네바 제 4 조약, 1994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비확산조약 가입과 관련된 안보에 관한 각서, 1997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연방 간 우호협력 및 파트너십에 관한 조약 및 기타 국제법적 합의를 위반하여 타국 군대의 부대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존재하는 것은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는 것이며, 국제법에 규정된 모든 결과를 수반하는 국제법적 불법행위이다.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 및 루한스크주의 일시적인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의 국가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특수성에 관한 법률'의 전문은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행사는 1974.12.14. 유엔 총회 결의 3314 '침략의 정의' 제 3 조 a, b, c, d, 및 g 에 비추어 군사적 침략의 범죄를 구성하며, 1994.12.5. 우크라이나의 핵확산금지조약 가입에 관한 안보각서(부다페스트 각서) 및 1997.5.31.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연방 간의 우호협력 및 파트너십에 관한 합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임을 확인하여, 1907.10.18. 헤이그 제 4 조약(육전법규관습에 관한 조약), 동 부속규칙(헤이그 육전규칙), 1949.8.12.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조약 및 1977. 6. 8. 국제무력분쟁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 8. 12.의 제네바 조약의 추가 의정서 (제 1 의정서)의 규정에 비추어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의 결과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점령한 일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러시아 연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범죄를 저질렀고 러시아 연방 군대의 도움을 받아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주의 특정 지역, 크림 자치공화국 및 세바스토폴리시의 영토에서 러시아 연방의 행동은 특히 휴전 체제의 조직적인 불이행, 민간인 및 우크라이나 국군 군인 및 우크라이나 법에 따라 조직된 기타 군사조직의 군인들 사이에서 다수의 희생자를 낸 민간인 재산과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폭격으로 국제법 원칙과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지역의 일시적인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의 국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하여, 우크라이나 최고의회가 이 법률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유럽평의회 규정 제 8 조에 따라 시작된 절차의 결과 러시아 연방은 더 이상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아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유럽평의회 결의는 2022.3.16. 각료이사회가 채택한 러시아 연방의 회원 자격 종료에 관한 결의 CM/Res(2022)2 이다.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는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은 유럽평의회 헌장 제 3 조에 따른 러시아 연방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자신과 미성년 자녀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A 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군사적 침략으로 인해 자신의 남편이자 자녀들의 아버지인 D 가 사망함으로써 자신과 자녀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러시아 연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고려했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러시아 연방의 군사적 침략으로 인해 개인과 그 재산, 건강, 생명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에서 외국 국가인 피고는 우크라이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가면제를 누리지 못한다.

대법원은 어떤 외국도 다른 국가에 군사적 침략이라는 수단으로 개입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행동은 주권에서의 일탈이라는 사실에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유엔헌장 제 2 조 1 항 4 호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어떤 국가의 영토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것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삼가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헌장 제 1 조 제 1 항에 따라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평화에 대한 위협의 예방 및 제거와 침략행위 및 기타 평화파괴행위의 진압을 위해 효과적인 집단적 조치를 취하며, 평화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국제분쟁이나 사태의 조정 또는 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그리고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는 목표를 추구한다.

국제법은 사람에게 신체적 손해나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결과 외국의 국가면제가 제한되는 근거로서 이른바 '불법행위 예외'를 체계화하고 있다. '불법행위 예외'의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속지주의 원칙: 작위/부작위의 장소가 법정지국의 영역 내에 있는 것,
- 2) 작위/부작위의 주체(외국의 대리인 또는 공무원)가 작위/부작위 시점에 법정지국의 영역에 존재할 것,
- 3) 작위/부작위가 국가에 귀속될 것임,
- 4) 법정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작위/부작위에 대한 책임이 성립할 것,
- 5) 사망 또는 부상, 재산상의 손해 또는 소실의 발생,
- 6) 작위/부작위와 사망 또는 상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소실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이 사건에서 러시아 연방에 국가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다.

- 소송의 대상은 우크라이나 국민인 개인이 다른 우크라이나 국민의 사망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다.
- 유엔 헌장에 규정된 타국(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 금지 원칙과 목표를 위반한 러시아 연방의 대리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외국이 군사적 침략을 하는 것은 주권적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유엔 헌장에 규정된 타국(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존중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우크라이나 국내법에 따르면, 일반 원칙으로 다른 사람(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자연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우크라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보상된다('일반 불법행위' 원칙).

또한, 대법원은 우크라이나 법원의 관할권이 모든 법적 분쟁과 형사소추에까지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다. 법이 정하는 경우 법원은 기타 사건도 심리한다(우크라이나 헌법 124 조 3 항). 즉,

대법원은 '불법행위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그 영토 내에서 우크라이나 시민에게 발생한 분쟁은 비록 러시아 연방을 포함한 외국과의 분쟁일지라도 우크라이나 법원이 적절하고 권한 있는 법원으로서 심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해당 민사소송을 심리하는 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 항소장 사본, 항소심 절차 개시 결정서를 우크라이나 주재 러시아 연방 대사관에 보내고 러시아 연방 대사관의 권한 있는 외교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때까지, 또는 해당 대사관에 요청을 송달한 것이 확인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한 시점까지 사건 절차를 정지한다는 항소법원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러시아 연방은 2014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정지하지 않는다. 러시아 연방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부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참여에 대한 동의 요청서를 이 국가의 대사관에 보내고 러시아 연방의 답변 또는 해당 요청이 송달되었다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없다.

또한, 파기심은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과 관련된 2022.2.24. 우크라이나 대통령령 제 64/2022 호가 2022.2.24. 5 시 30 분부터 30 일간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발동하고, 2022.3.14. 우크라이나 대통령령 제 133/2022 호가 2022.3.26. 5 시 30 분부터 30 일간 계엄령 기간을 연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전면 침략에 따라 2022. 2. 24.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국교를 단절했으며, 주 우크라이나 러시아 연방 대사관의 우크라이나 영토 내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대사관에 대한 각종 요청 및 서신 발송이 불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2014 이후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과 우크라이나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 무시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러시아 연방이 피고가 되는 것에 대한 동의 요청서를 우크라이나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22.2.24.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연방의 외교관계 단절로 인해 이러한 송부도 불가능하다.

러시아 연방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는 전면적인 군사적 침략을 계속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러시아 연방이 이 사건의 피고가 되는 것에 대해 러시아 연방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재로서는 부적절하다. 이 사건의 절차를 정지하는 것은 이 사건의 심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킬 것이며, 원고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파기심은 항소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재개한 것을 고려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항소법원의 결정이 우크라이나의 법률, 특히 '우크라이나의 일시적인점령지에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 및 법제도의 보장에 관한 법률',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지역의 일시적인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의 국가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정책의 특수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내려진 결정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침략국에게 사건 참여를 통지하고 사건 절차를 정지하는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보호 및 침략 하에서 사법절차의 효율성 원칙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의 대상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정 유형의 사건에서 국가면제 문제의 해결이 통일적인 법 집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항소법원이 이 사건 소송의 절차를 변경하더라도 파기심은 이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항소법원 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 유형의 분쟁에서 외국의 국가면제를 제한하는 근거에 관한 법적 결론을 제공하는 위의 여러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러시아 대사관에 대한 요청서 송부 및 사건 절차 정지는 우크라이나 형사소송법 제 251 조, 제 252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러시아 대사관에 대한 요청서 송부 및 사건 절차 정지 사유의 존재에 대한 항소법원의 결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우크라이나 국가에 대한 이유 없는 전면적인 군사적 침략,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수많은 제노사이드를 자행한 러시아 연방은 우크라이나 자연인에 대한 그러한 침략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고 해결하는 우크라이나 법원의 관할권을 국가면제를 근거로 거부할 권리를 장래에 걸쳐 갖지 않는다.

대법원은 피고인 침략국이 자기방어를 위한 주권적 권리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지 않고,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모든 주권을 배신적으로 침해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국가면제를 계속 이용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2021.9.1. 트랜스카르파티아 항소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항소법원에 환송한다.

파기상소 심리결과에 따른 결론

우크라이나 민사소송법 제 409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르면, 파기심은 파기상소 심리 결과에 따라 제 1,2 심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특히 확립된 관할 또는 심리 계속에 의한 새로운 심리를 위해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송할 권한이 있다.

우크라이나 민법 제 411 조 6 항에 따르면, 제 1,2 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계속 심리하는

이유는 제 1,2 심의 위법한 결정을 초래하고 더 이상의 심리를 방해하는 실체법 또는 절차법 규범 위반이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항소법원의 결정이 변경된 이상, 신청인의 청구와 같이 이 사건을 계속 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실체법 및 절차법 규범에 위배되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규범 적용에 대한 결론

우크라이나 법원의 관할권은 모든 법적 분쟁 및 모든 형사 소송에 적용된다.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법원은 기타 사건도 심리한다(우크라이나 헌법 제 124 조 3 항).

이 사건에서 러시아 연방에 국가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다:

- 소송의 대상은 우크라이나 국민인 개인이 다른 우크라이나 국민의 사망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다.;
- 피해 발생지는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영토이다.
- 유엔 헌장에 규정된 타국(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 금지 원칙과 목표를 위반한 러시아 연방의 대리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외국이 군사적 침략을 하는 것은 주권적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유엔 헌장에 규정된 타국(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존중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우크라이나 국내법에 따르면, 일반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자연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우크라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보상된다('일반 불법행위' 원칙).

대법원은 '불법행위 예외'가 적용될 경우, 우크라이나 시민에게 영토 내에서 발생한 분쟁은 러시아 연방을 포함한 외국과의 분쟁일지라도 우크라이나 법원이 적절하고 권한 있는 법원으로서 심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소송비용에 대하여

우크라이나 민법 제 141 조 13 항에 따르면, 항소심 또는 파기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판결을 채택한 경우, 이 법원은 그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금을 변경한다.

파기심 심리 결과에 따라 항소법원 결정은 취소되므로 대법원은 재판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주 문

우크라이나 민법 400 조, 409 조, 411 조, 416 조, 419 조에 따라 대법원은 민사파기심 제 3 부로서 선고한다.

자신과 미성년 자녀 B, C 의 이익을 대표하는 A 의 파기상소를 일부 인용한다.

2021.9.1. 트랜스카르파티아 항소법원의 결정을 취소한다.

파기심 결정은 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최종적인 것으로 상소할 수 없다.

재판장 I. M. Falovska
판 사 V. M. Ignatenko
S. O. Karpenko
VV Serdyuk
V. A. Strilchuk

[→ HOME](#)